KOSHA GUIDE

C - 91 - 2015

- (5) 소화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.
- (6)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<별표 1>과 같다.
- (7)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, 난연 재료로 구성된 장소에는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- (8) (7)항에도 불구하고 폭발성·인화성·산화성·가연성 등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능력단위 2단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,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재료로서 발포시킨 합성수지류를 설치한 때에는 발포수량 매 1,000 세 제곱미터 이상 마다 능력단위 1단위씩을 추가하여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소화기는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실은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, 각 층 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10) 지하층을 포함하여 각 층 마다 화재발생을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작동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11) (10)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흥부에 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때에는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는 흥별로 근로자의 투입 현황을 파악하고 투입된 근로자 중 방화담당자를 선정하여 화재종합방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화재종합방재실장은 흥별 방화담당자와 비상연락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(12) 구조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통신설비를 연장하여 설치하고 무전기 또는 무선 전화기 등이 모든 층에서 원활히 개통될 수 있도록 중계설비를 보완하여야 한다.